

양곡가공업 [] 휴업 신고서 [] 폐업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 시
신고인	업체명		
	주 소	사업장	전 화 번 호
		신고인	전 화 번 호
	대 표 자 성 명		생 년 월 일
양곡가공업 신고	신고업종		신고번호 제 호
	휴업 예정일		재개업 예정일(휴업인 경우)
	폐업 예정일		
휴업 사유 또는 폐업사유 (구체적으로 기재)			

「양곡관리법」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	없음
유의사항			

- 신고대상: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
- 「양곡관리법」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양곡관리법」 제36조제1항제3호).

처리절차								
신고서 작성 신고인	→	접 수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(양곡 담당부서)	→	검 토 · 확 인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(양곡 담당부서)	→	결재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(양곡 담당부서)	→	양곡가공업신고대장에 신고사항기재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(양곡 담당부서)